



제 3 4 0 회 정례회
제1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
2023. 06. 19.(월)

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273
제안일자	2023. 05. 31.
회부일자	2023. 06. 02.

행정안전복지위원회
전문위원실

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희수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최근 정부는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·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천명한 바, 경북도 차원에서도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보호·재활을 통해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예방과 중독 치료보호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~제11조)
-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06.02. ~ 06.12.(경상북도 공고 제2023-57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□ 제안이유 및 필요성

- 정부는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.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은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예방 및 치료 계획의 수립, 실태 조사, 예방사업, 치료사업,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「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본 조례안의 발의 주요 목적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제명에 중독 치료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

판단됩니다.

- 안 제1조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‘마약류’, ‘약물’, ‘마약류 중독자’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·사회복귀 촉진에 관한 조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뿐만 아니라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들의 조속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4조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이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·추진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2020년 311명이었던 15세~19세 마약사범이 2022년 440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, 15세미만 마약사범의 수는 같은 기간 2명에서 41명으로 20배이상 증가했습니다.1)
 - 청소년과 아동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와 유통에 가담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바,
 - 예방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과 학교의 예방교육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2021년 전체 마약사범은 16,153명이고, 재범률은 36.6%에 달합니다.2) 이러한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중독자의 재활 등 치료 지원 부족이 지목되고 있는바,
 -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개발, 중독예방과 상담,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사업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 또는 지정 할 수 있으며, 마약류 사용자에게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) 검찰청 마약범죄수사 통계자료
 2)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

- 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3)와 「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규정」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중독자를 신속하게 발견·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경상북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」 제5조제2항4)과 제6조5)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

- 3)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정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제5조(각 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
-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
 2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5) 제6조(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)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(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)이 된다.
-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 2. 판사, 검사, 변호사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 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 -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본 조례안의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 - 현재, 경상북도에서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·홍보 교육(2천만원), 마약류중독자 치료·보호대상자 치료비 지원(2천만원), 마약류취급업소 지도·점검(1,323개소), 마약류취급자 교육(550명)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-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의 마약 투약과 판매, 유통이 증가와 같은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, 조례 개정 이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안 제1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5조는 세계마약 퇴치의 날(6.26.)에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·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○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에 대하여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성공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바,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□ 종합의견

○ 마약범죄가 지역과 연령, 성별에 관계없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○ 15세~19세 청소년 마약 사범수가 440명에 달하고, 15세 미만의 마약사범이 41명에 달하는 등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○ 마약범죄의 경우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재범률이 36.6%에 달하기 때문에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반드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

○ 정부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

○ 이에, 본 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, 도지사의 책무,

예방 및 치료 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예방사업, 치료사업,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**경찰청 마약범죄수사 현황**

□ 2022년 마약범죄수사 통계자료

연령별 마약류사범

(단위 : 명)

연령	15세 미만	15~19	20~29	30~39	40~49	50~59	60세 이상	연령 미상	합계
사범	41	440	5,804	4,703	2,815	1,976	2,166	450	18,395

□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

연도별 마약류 범죄 재범률(2017~2021)

(단위 : 명)

연도	2017	2018	2020	2021
전체사범	14,123	12,613	18,050	16,153
재범인원	5,131	4,622	5,933	5,916
재범률	36.3%	36.6%	32.9%	36.6%